

1. 개정 이유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여부는 법원, 경찰 등 확인서를 제출받은 개별기관이 판단해야 함에도 서식에서 이러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별지 제3호서식 상의 유의사항을 삭제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자 확인서의 용도 제한 규정 삭제(안 별지 제3호서식)

1)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 유의사항: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성평등가족부령 제 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